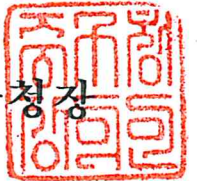
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
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
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2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
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 증액 및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유희
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
을 제고하기 위해 『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
회계 설치 조례』를 일부 개정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제10조에 규정한 융자한도 및 이율 등 변경
 - 제10조 제1항 중 “2천만원 이하”에서 “4천만원 이하”로 변경
 - 제10조 제2항 중 “연 2.8%”에서 “연 2%”로 변경

- 제4조(세출)에 “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출 및 구의회 사전보고” 추가 명시

3. 의견제출

-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 사회복지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, 문의전화: 3396-5394, FAX: 3396-8736, 메일: kya12345@junggu.seoul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① 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. 다만,
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
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
의하는 회기 개시 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”를 “안정자금은 4천만원
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 2.8%”를 “연 2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.	제4조(세출) ① 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. 다만, 구 재정운영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4천만원 이하,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.	제10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① ---- ----- -----4천만원----- ----- -----.
제10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.8%로 한다.	제10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②---- ----- 2%-----.